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0
		제정 일자	
	대기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2 / 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생산공정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관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및 배출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리

3.1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 입자상의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2 가스상 물질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의 물질

3.3 입자상 물질

물질의 폐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3.4 먼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3.5 악취

황화수소, 메르캡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3.6 특정대기유해물질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 또는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8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하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 1)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 총원 또는 예산의 승인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0
		제정 일자	
	대기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3 / 5

4.2 해당부서장 (경영지원본부장)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승인/대표이사 보고
- 2) 생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파악 및 관리업무 총괄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증설에 관련 투자계획 검토 및 승인/대표이사 보고
- 4) 환경기술인 선임 시 법정자격요건 이상 소지자 채용관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3 해당부서 파트장(총무팀장)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추진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관공서 및 대외업무 주관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 관리 감독
-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기록의 유지 관리
-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 및 시정조치
-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증설과 관련된 투자계획 수립 및 품의

4.4 환경기술인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소유자로 선임된 인원에 한함)

- 1) 배출시설(덕트) 및 방지시설의 운영 / 관리, 보수 업무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관공서 및 대외업무 실무 추진
- 3) 방지시설별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자가측정기록, 설비보수이력 등의 정보 수집
-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

4.5 대기오염물질 배출부서장 (소재생산팀장, 가공생산팀장)

-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 2) 배출시설의 신·증설, 이설 또는 폐쇄 등의 사업계획 시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청
- 3) 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 또는 비정상상황 발생 시 해당부서에 신속한 통보

5. 업무절차

5.1 생산현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파악

- 1) 해당부서 파트장 및 환경기술인은 당사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배출시설, 발생공정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 ▶ 당사 배출시설 : 주조기, 중자기, 열처리로, 용해로, 래들예열기, 함침설비, 탈사기, 쇼트기, 가공세척기
 - ▶ 당사 방지시설 : 세정식 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 2) 해당부서 파트장 및 환경기술인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농도를 확인 및 숙지하고, 당사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농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 3) 대기오염물질 배출부서장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 운전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료, 부원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물이 정량대비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배출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4) 대기오염물질 배출부서장은 공정 이상발생, 예상치 못한 사고 등 환경사고가 우려될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0
		제정 일자	
	대기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4 / 5

5.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허가

- 1) 해당부서 파트장은 당사가 보유한 설비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2) 해당부서 파트장은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부서에 요구하여 현장과 일치하는 자료를 인허가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반드시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보완요청이 있을 시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그 즉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대기오염물질 배출부서장은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폐쇄, 원료 또는 사용물질의 변경, 공정변경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또는 사용물질의 변경 시 가급적 특정대기 유해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원료나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5) 해당부서장은 해당부서 파트장이 상신한 인허가 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5.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 1) 해당부서 파트장 또는 환경기술인은 매일 점검을 통해 방지시설의 이상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또는 부적합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환경기술인은 방지시설별로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자가측정기록, 설비보수이력 등의 정보를 매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3) 해당부서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을 중단하여야 한다.
- 4) 해당부서 파트장은 방지시설의 비정상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비품을 항상 구비 하여야 하며, 복수의 협력업체들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5) 해당부서 파트장은 방지시설의 보완, 교체, 증설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생산 및 사업활동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6) 환경기술인은 방지시설 설비의 고장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부서장에게 개선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그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거나 미뤄서는 안된다.

5.4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의 실시

- 1) 해당부서 파트장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2) 해당부서 파트장은 필요 시 방지시설 전단에서 유입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제거율을 산정하여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무	표준 번호	DSGP - 0500
		제정 일자	
	대기오염물질 관리규정	개정 번호	
		페이지	5 / 5

5.5 교육훈련

- 1) 해당부서장은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방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정보의 습득을 위해 방지시설의 운영방법, 긴급상황 조치방법, 일상점검 및 조치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 2) 법적 선임된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 선임일로부터 1년이내 이수하여야 함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함

6. 기록 및 보관

문서명	양식번호	보관문서	보존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인터넷 전산입력)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총무팀	-